



제423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국립국가폭력트라우마치유센터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적용 제외 >

■ 전진숙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8019호)

2025. 3.

보 건 복 지 위 원 회

전문위원 오 세 일

목 차

I . 개요	1
II . 검토 의견	3
1. 「국립국가폭력트라우마치유센터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적용 제외	3

I. 개요

1. 전진속의원 대표발의안(의안번호 제8019호)

가. 제안경위

(1) 제 안 자 : 전진속의원 등 10인

(2) 제 안 일 : 2025. 2. 10.

(3) 회 부 일 : 2025. 2. 12.

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재난이나 그 밖의 사고로 정신적 피해를 입은 사람에 대한 심리지원을 규정하고 있으나, 「국립국가폭력트라우마치유센터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의 적용대상과 중복되어 법적 정비가 필요한 상황임.

이에 「국립국가폭력트라우마치유센터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규정으로 명시하여 양 법률 간 적용범위를 명확히 하고, 각각의 피해 유형에 맞는 전문적인 치유와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5조의2).

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전진속의원이 대표발의한 「국립국가폭력트라우마치유

센터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8017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II. 검토 의견

1. 「국립국가폭력트라우마치유센터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적용 제외

□ 개정안은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트라우마센터와 「국립국가폭력트라우마치유센터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립트라우마치유센터의 지원 대상을 명시적으로 분리하려는 것임(안 제15조의2).

현행	개정안
제15조의2(국가트라우마센터의 설치·운영)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심리적 안정과 사회적응을 지원(이하 이 조에서 “심리지원”이라 한다)하기 위하여 국가트라우마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15조의2(국가트라우마센터의 설치·운영) ① ----- ----- ----- ----- ----- -----.
1. 재난이나 그 밖의 <u>사고</u> 로 정신적 피해를 입은 사람과 그 가족	1. ----- <u>사고</u> (「국립국가폭력트라우마치유센터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2. (생략)	2. (현행과 같음)
② ~ ⑥ (생략)	② ~ ⑥ (현행과 같음)

□ 현행법은 재난이나 그 밖의 사고로 정신적 피해를 입은 사람과 그 가족뿐 아니라 구조, 복구, 치료 등 현장대응업무에 참여한 사람으로서 정신적 피해를 입은 사람도 국가트라우마센터가 제공하는 심리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¹⁾, 현재 국가트라우마센터는 국립정신건강센터에서 그 역할을 맡고 있음.

<국립정신건강센터의 조직도>



*자료: 보건복지부

□ 한편, 행정안전부 소관 법률인 「국립국가폭력트라우마치유센터의

1)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의2(국가트라우마센터의 설치·운영)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심리적 안정과 사회 적응을 지원(이하 이 조에서 “심리지원”이라 한다)하기 위하여 국가트라우마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1. 재난이나 그 밖의 사고로 정신적 피해를 입은 사람과 그 가족

2. 재난이나 사고 상황에서 구조, 복구, 치료 등 현장대응업무에 참여한 사람으로서 정신적 피해를 입은 사람

② 국가트라우마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심리지원을 위한 지침의 개발·보급

2.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한 심리평가, 심리상담, 심리치료

3. 트라우마에 관한 조사·연구

4. 심리지원 관련 기관 간 협력 및 연계 체계의 구축

5. 트라우마 극복에 관한 대국민 교육 및 홍보

6. 심리지원 전문인력에 대한 교육 및 훈련

7. 재난이나 사고 이후 정신건강상태에 대한 측정도구 개발

8. 그 밖에 심리지원을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업무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국가폭력등²⁾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과 그 가족의 트라우마 후유증과 이로 인한 심리적 고통을 치유하고 건강한 삶의 회복을 지원하기 위하여 국립국가폭력트라우마치유센터³⁾를 설립·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개정안은 국가폭력등으로 인한 경우를 현행법에 근거한 국가트라우마센터의 지원 대상인 ‘재난이나 그 밖의 사고’에 포함시키지 않음을 명확히 하려는 것으로서, 심리지원의 필요성이 있다 하더라도 국립국가폭력트라우마치유센터와 국가트라우마센터가 수행하는

2) 「국립국가폭력트라우마치유센터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국가폭력”이란 1945년 8월 15일 이후 국가 공권력의 불법적 행사에 의하여 국민의 헌법상 기본권을 제한하거나 침해한 행위로서 민간인 집단희생, 사망·고문·상해·실종 등 중대한 인권침해 및 조작의혹, 테러·폭력·학살, 군 의문사 및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제대군인이 군 복무 중 겪은 중대한 인권침해 등과 관련된 행위를 말한다.

2. “국가폭력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국가폭력

나. 1945년 8월 15일 이후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정하거나 대한민국을 적대시하는 세력 또는 국제테러 단체에 의한 테러·인권유린과 폭력·학살·의문사사건

3) 현재 광주광역시에 국립트라우마치유센터가, 제주특별자치도에 국립제주트라우마치유센터가 설립·운영 중에 있음.

구분	국립트라우마치유센터	국립제주트라우마치유센터
위치	광주광역시 서구 월드컵4강로 116번길 19 (옛 국군광주병원 인근)	제주특별자치도 중안로 273 나라키움 제주마루 206호
인원	정원 13명 ※ 광주광역시 공무원 4명 별도 파견	정원 13명 ※ 제주특별자치도 공무원 3명 별도 파견
규모	대지 4,000㎡, 건물 2,200㎡ ※ 총사업비 107억 2,400만원(국비 100%), 사업기간 2021~2024년, 2024.4월 준공	전용면적 458㎡ ※ 임차
시설현황	상담실 6, 맞이방, 물리치료실1, 프로그램실 4, 심리검사실 1	상담실 2, 맞이방, 물리치료실 1, 프로그램실 2
예산	2,201백만원(국비 50%, 지방비 50%) - 기관운영출연금 1,251백만원 - 사업출연금 950백만원	1,707백만원(국비 50%, 지방비 50%) - 기관운영출연금 1,205백만원 - 사업출연금 502백만원

사업 또는 업무가 서로 다르고 근거 법률이 상이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개정안을 통하여 중복 지원을 막고 지원서비스 제공의 전문성과 효율성 향상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국립국가폭력트라우마치유센터와 국가트라우마센터의 수행 업무>

「국립국가폭력트라우마치유센터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립국가폭력트라우마치유센터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트라우마센터
제8조(사업) 치유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치유대상자의 트라우마와 그로 인한 심리적·신체적 증상의 치유·재활 및 사회적응 지원 2. 국가폭력등으로 인한 트라우마 치유 및 재활에 관한 연구·개발 3. 국가폭력등으로 인한 트라우마 치유 및 재활에 관한 교육·홍보 4. 국가폭력등으로 인한 트라우마 치유 및 재활에 관한 국제협력 5. 그 밖에 국가폭력등으로 인한 트라우마 치유 및 재활과 관련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5조의2(국가트라우마센터의 설치·운영) ② 국가트라우마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심리지원에 위한 지침의 개발·보급 2.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한 심리평가, 심리상담, 심리치료 3. 트라우마에 관한 조사·연구 4. 심리지원 관련 기관 간 협력 및 연계체계의 구축 5. 트라우마 극복에 관한 대국민 교육 및 홍보 6. 심리지원 전문인력에 대한 교육 및 훈련 7. 재난이나 사고 이후 정신건강상태에 대한 측정도구 개발 8. 그 밖에 심리지원을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업무

□ 참고로 전진숙의원이 개정안과 함께 대표발의한 「국립국가폭력트라우마치유센터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안번호 제8017호)은 국가폭력의 정의에 국가 공권력의 불행사를 포함시키려는 것⁴⁾인데,

해당 개정안의 입법취지가 국민의 안전을 위하여 마땅히 집행되어야 할 공권력이 현실에서 행사되지 못하여 발생한 피해에 대하여는 「국립국가폭력트라우마치유센터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기 위한 것이어서 해당 일부법률개정안의 심사과정과 결과를 우리 위원회의 심사과정에서도 참고할 필요가 있어 보임.

< 개정안에 대한 관계 부처 의견 >

부처명	개정안에 대한 의견
보건복지부	○ 국가트라우마센터와 국립국가폭력트라우마센터의 지원 대상 중복을 정비하려는 개정안의 취지에 공감함. ○ 다만, 개정안과 함께 발의된, 국가폭력의 범위에 공권력의 불행사를 포함시키는 「국립국가폭력트라우마치유센터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입법취지를 고려하여 심사할 필요가 있어 보임.

4) 「국립국가폭력트라우마치유센터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8017호)의 신·구조문대비표는 다음과 같음.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
1. “국가폭력”이란 1945년 8월 15일 이후 국가 공권력의 불법적 행사에 의하여 국민의 헌법상 기본권을 제한하거나 침해한 행위로서 민간인 집단희생, 사망·고문·상해·실종 등 중대한 인권침해 및 조작의혹, 테러·폭력·학살, 군 의문사 및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제대군인이 군 복무 중 겪은 중대한 인권침해 등과 관련된 행위를 말한다.	1. ----- ----- <u>행사 또는 불행사에</u> ----- ----- ----- ----- ----- -----.
2.·3. (생략)	2.·3. (현행과 같음)

행정안전부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국립국가폭력트라우마치유센터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의 의결을 전제로 발의된 것으로 보이고, 향후 국가 공권력의 불행사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를 어느 법률의 적용대상으로 보아야 할 지에 대하여 논의가 필요할 것임.
--------------	--

문 의 처
02)6788-5498